

1991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1 9 9 1 . 1 1

朴 英 凡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목 차

I. 서	7
II. 생계비 구조 및 산정개요	8
III. 소비지출	13
IV. 비소비지출	36
V.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43
VI. 중위값을 이용한 생계비	45
참고문헌	50

표 목 차

〈 표 1 〉	최임심생계비의 구조	10
〈 표 2 〉	1 인취업 근로자가구의 가구별 소비지출 평균치	15
〈 표 3 〉	표준가구대 최빈값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1990. 3)	17
〈 표 4 〉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최빈값)	19
〈 표 5 〉	가구·비목별 최빈값의 추정치	20
〈 표 6 〉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최빈값)	21
〈 표 7 〉	식품군별 식품군류 구성비교	25
〈 표 8 〉	다섯가지 기초식품군	26
〈 표 9 〉	1991년 식료품비	29
〈 표 10 〉	4 인환산치위한 회귀방정식 추정계수 (1991. 3)	32
〈 표 11 〉	비식료품비관련 비목별 4 인환산치	33
〈 표 12 〉	가구별 최임심생계비의 소비지출 (최빈값)	35
〈 표 13 〉	가구별 조세액 (최빈값)	38
〈 표 14 〉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액 (최빈값)	39
〈 표 15 〉	오물수거	41
〈 표 16 〉	가구별 오물세 지출액 (최빈값)	41
〈 표 17 〉	가구별 비소비지출 (최빈값)	42
〈 표 18 〉	가구별 생계비	44
〈 표 19 〉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최빈값)	46
〈 표 20 〉	가구·비목별 중위값추정치	47
〈 표 21 〉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중위값)	48
〈 표 22 〉	가구별 생계비 (중위값)	49

그림 목 차

[그림 1]	최임심생계비 산정방법	12
[그림 2]	식료품비 산정방법	23

I. 서

1986년 12월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 및 표본생계비등 그 개념과 산정방법이 다양한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어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산정된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도입된 후 노·사·정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은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가 추정되었다.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수준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을 위한) 생계비 및 최심위사무국에서 조사하는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적 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심위산하 연구위원회에 생계비단일화 방안을 제시할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여러 번에 걸친 논의의 결과 1990년 2월 생계비추정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방식, 생계비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의 명칭은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최임심생계비로 칭함)' 로 하고 생계비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위원회 실무소위의 합의사항을 최심위 생계비분과위원회도 승인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노·사·공익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본연구원이 진행한 1992
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Ⅱ. 생계비 구조 및 산정개요

생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크게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다시 분류된다.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수록되어 있는데, 산정의 기본단위는 1)식료품 2)주거 3)광열·수도 4)가구·집기 5)피복·신발 6)보건·의료 7)교육·교양 8)교통·통신 9)기타소비지출 10) 비소비지출이다.

가구구성비의 형태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므로 생계비수준도 변화하는데 본생계비는 가구주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가구원수별로 (즉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비가 산정된다.

소비지출관련 생계비항목의 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환산승수가 추정되어야 하는데 환산승수는 최빈값과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다. 환산승수는 1990년 3월 도시가계조사(경제기획원)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로 비목별 최빈값과 중위값의 추정치를 구하여, 이것을 동년 동월의 4인가구 비목별평균값으로 나눈 수치이다. Ⅲ-V장에서 최빈값을 기준한 생계비가 추정된다. 중위값을 이용한 생계비도 환산승수 추정을 제외하고는 최빈값생계비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되므로 VI장에서 그 결과만 요약되었다.

소비지출의 식료품비중 순식품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첫째, 1인 성인남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열량이 2,600 Kcal라는 가정 아래 국민영양조사(보건사회부)와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를 이용하여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둘째, 당해년도 3월 기준 소비자물가(경제기획원)와 물가 연보를 기초로 하여 식품구성 식품가격을 산정하여 1인 가구의 식료품비를 구한다. 셋째, 앞에서 구한 각 가구별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가구별 식료품비를 산정한다. 한편 기호식품 및 외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은 도시

〈 표 1 〉 최임심생계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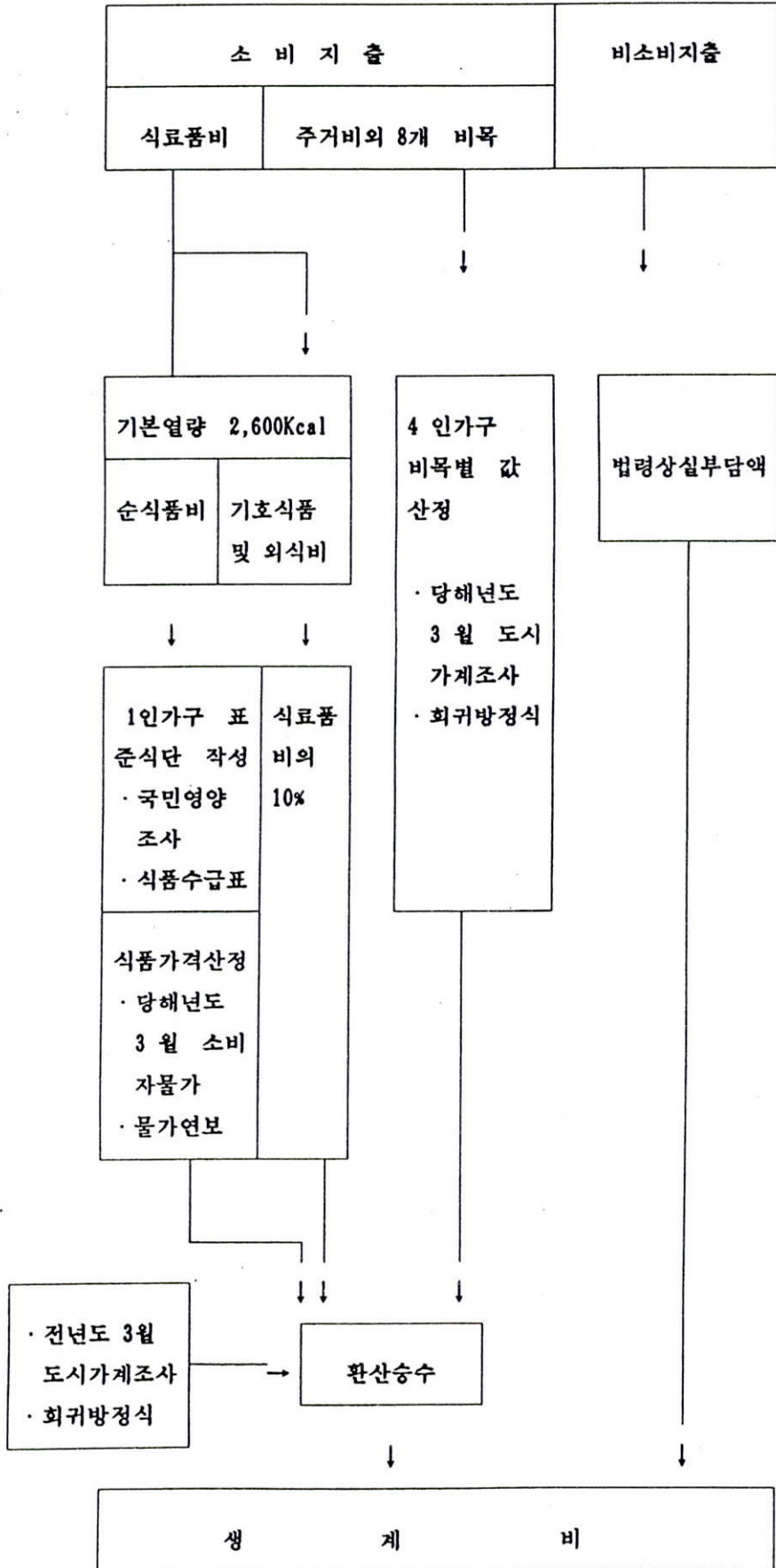
생계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 kcal 기준
		주거	월세, 주택설비수리 전세 및 자가평가액
		광열·수도	전기료, 열료, 수도료
		가구·집기	일반가구, 가정용 기구
		피복·신발	외의, 스웨터셔어츠, 내의, 기타피복, 신발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품 기 구,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교양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타	담배, 잡비, 이·미용 목욕, 이발, 세면도구, 장신구
	비소비지출	조세	소득세, 방위세, 주거세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오물세	

가계조사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식료품비 이외의 소비지출비는 1991년 3월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1991년 3월 기준 1인 취업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값을 회귀방정식에 의하여 추정한다. 1인 취업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값이 구하여졌으므로 전단계에서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가구별 소비지출관련 비목(식료품비제외) 값이 산정된다.

끝으로 비소비지출은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정된다. 위에서 설명된 생계비 산정방법이 [그림 1]에 요약되었다.

[그림 1] 생계비 산정방법



Ⅲ. 소비지출

소비지출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은(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비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각 비목의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생계비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1. 환산승수

가. 정의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 의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 \text{ 비목 최빈값추정치}}{\text{4인가구 } i \text{ 비목 평균지출액}} \dots\dots\dots(\text{식 } 1)$$

으로 정의된다.

한편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전년도 3월(1991년 추정생계비의 경우 1990년 3월)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한다.

나. 4 인가구 비목별 평균지출액 산정

(1991년도 최임심생계비 산정이 본고의 목적이므로) 1990년 3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를 포함한 2~5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 및 소비지출총액을 계산한 결과가 <표 2>에 수록되어있다.

다.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1 단계 : 2~ 5인 가구별 최빈값계층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0년 3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총액의 평균(u)과 분산(σ^2)을 계산하여 최빈값 (m)을 구한다.

$$m_j = e(u - \sigma^2) \dots\dots\dots (식 2)$$

여기에서 m = 최빈값

u = log(소비지출총액) 의 평균

σ^2 = log(소비지출총액) 의 분산

j = 해당가구

최빈값계층의 구간은 $m \pm \frac{1}{2}\sigma$ 로 설정되는데 σ^2 는 소비지출총액의

분산이다.

< 표 2 > 1인취업 근로자가구의 가구별 소비지출 평균치

(단위 : 원)

	1990년 3 월			
	2 인	3 인	4 인	5 인
소비지출계	500,659	628,927	861,312	970,457
· 식 료 품	133,494	153,796	193,163	223,824
· 주 거 비	112,430	157,816	189,287	231,260
· 광열·수도	23,287	26,100	33,610	40,440
· 가구·집기	25,966	30,318	44,281	37,883
· 피복·신발	38,454	37,485	59,931	49,866
· 보건·의료	14,311	35,354	39,742	40,053
· 교육·교양	32,215	57,758	104,241	175,282
· 교통·통신	32,561	37,810	68,385	48,490
· 기 타	87,942	92,490	128,672	123,359

앞에서 구한 소비지출총액의 최빈값(m)과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총액의 평균값

(u)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m_j / \bar{u}_j \dots\dots\dots (식 3)$$

여기에서 m = 소비지출총액의 최빈값

\bar{u} =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총액의 평균값

j = 해당가구

으로 정의된다.

최빈값계층의 가구·비목별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최빈값계층 가구의 소비지출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본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 3>은 표본가구 전체와 최빈값계층 가구의 소비지출총액을 각 가구별로 비교하고 있다.

2 단계 : 회귀방정식 추정

(1인가구는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단계에서 구한 2~5인 (조정계수가 고려된) 최빈값계층 자료를 이용해,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한다.

회귀방정식은

$$Y_j = a_j X^2 + b_j X \quad (a_j < 0, b_j > 0) \dots\dots\dots (식 4)$$

< 표 3 > 표준가구 대 최빈값계층 평균 소비지출액 비교 (1990. 3)

가 구 원	표준가구 전체 (A)	최빈값계층 가구 (B)	B ÷ A
2 인	500,659	325,089	0.64
3 인	628,927	413,748	0.66
4 인	861,312	568,780	0.66
5 인	970,457	649,498	0.67

여기에서 Y = 비목값
 X = 가구원수
 j = 해당비목

로 정의된다.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의 계수추정치가 <표 4>에 수록 되어있다.

3 단계 :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교육·교양비목은 1인가구 최빈값 추정치가 부의 값을 가지므로 교육·교양비를 제외한 1인가구 소비지출 총계 추정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전년도 최빈값 추정치에 곱한 수치로 대체하였다.

라. 환산승수

환산승수는 (해당가구 j 비목의 최빈값 추정치 ÷ 4인가구 j 비목 평균지출액)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 88,288원을 4인가구 식료품비 평균지출액 193,163원으로 나눈 0.452이다.

환산승수 정의에 따라 구한 각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이 <표 6>에 나타나 있다.

< 표 4 >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최빈값)

	1990년 3월		
	a	b	R ²
식 료 품	-3,307	50,758	0.87
주 거	-951	34,713	0.75
광열·수도	-506	8,851	0.71
가구·집기	-187	5,559	0.19
피복·신발	-198	8,741	0.45
보건·의료	-225	6,769	0.31
교육·교양	4,293	-4,145	0.50
교통·통신	-1,493	12,505	0.55
기 타	-2,501	28,041	0.64

< 표 5 > 가구·비목별 최빈값의 추정치

(단위 : 원)

	1990년 3 월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식 료 품	47,451	88,288	122,511	150,120	171,115
주 거	33,763	65,623	95,582	123,639	149,795
광열·수도	8,345	15,679	22,000	27,310	31,608
가구·집기	5,372	10,368	14,990	19,237	23,109
피복·신발	8,543	16,691	24,444	31,802	38,765
보건·의료	6,544	12,638	18,283	23,478	28,222
교육·교양	3,809	8,881	26,200	52,104	86,595
교통·통신	11,012	19,038	24,078	26,132	25,200
기 타	25,540	46,077	61,612	72,144	77,675

< 표 6 >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최빈값)

	1990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식 료 품	0.246	0.457	0.634	0.777	0.886
주 거	0.178	0.347	0.505	0.653	0.791
광열·수도	0.248	0.466	0.655	0.813	0.940
가구·집기	0.121	0.234	0.339	0.434	0.522
피복·신발	0.143	0.279	0.408	0.531	0.647
보건·의료	0.165	0.318	0.460	0.591	0.710
교육·교양	0.037	0.085	0.251	0.500	0.831
교통·통신	0.161	0.278	0.352	0.382	0.369
기 타	0.198	0.358	0.479	0.561	0.604

2. 1 인가구 식료품비¹⁾

1 인가구 식료품비 산정의 기본단위는 중등활동에 종사하는 18세 남자이며, 식료품비 산정을 위한 기준영양소로는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보건사회부 제정 18세 성인남자의 1인 1일 한국인 영양권장량(1989년 제5차 개정)은 2,500Kcal 이나 지금까지의 표준생계비 산정의 경우와 같이 여유분 100 Kcal를 추가하여 2,600Kcal가 기준열량이 된다.

[그림 2]는 식료품비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식료품비 산정을 위하여는 첫째,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한 식품군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고 여유분과 식습관을 고려하여 2,600Kcal 기준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 영양조사, 식품수급표 및 식품생산통계를 참고로 하여) 식품구성을 결정한다. 둘째, 식품성분표에 기초하여 선정된 식품 및 그 양에 따른 열량 및 영양가를 계산하여 모든 영양소가 영양권장량에 따라 충분하게 공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셋째, 영양가 확인 후 식품분석의 가식부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을 결정한다. 넷째, 경제기획원 소비자물가조사와 종합물가정보를 이용하여 식품구성 식품가격을 산정한 후 1일 순식품비를 계산한다. 다섯째, 1일 총식품비의 10%를 기호식품 및 외식비로 가정하며 순식품비와 기호식품 및 외식비의 합계인 1일 총식품비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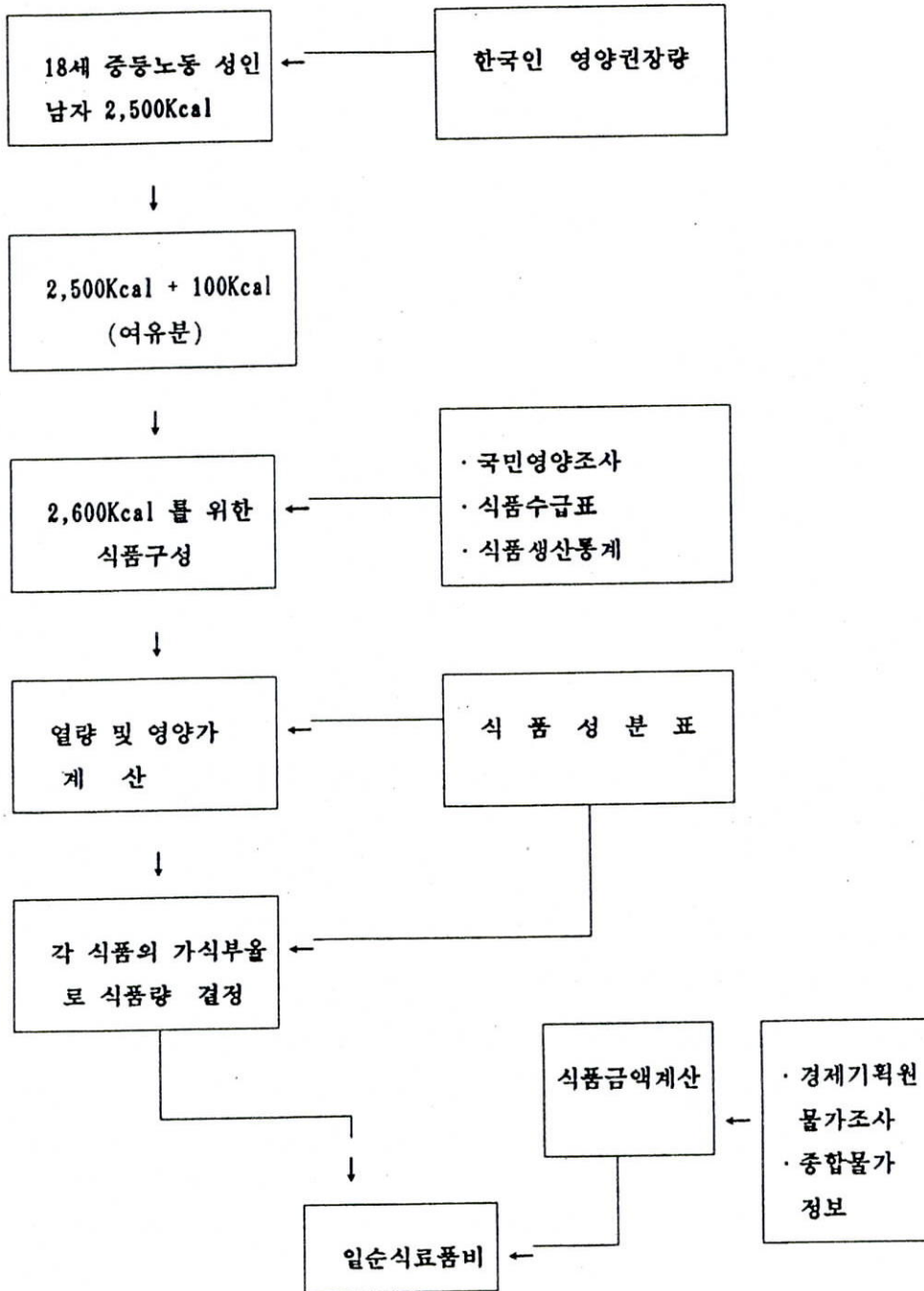
끝으로 1일 총식품비에 (365 ÷ 12)을 곱하여 월식품비를 산정한다.

가. 식품구성

기초열량을 공급하는 식품의 배합을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 국민영양조사(보건사회부), 영양권장량(한국영양학회) 등

1) 1인가구 식료품비는 한국식품연구소 문현경 박사가 산정하였다.

[그림 2] 식료품비 산정방법



일총식료품비 = 일순식료품비 + 외식 및 기호식품비 (일총식료품비의 10%)

월식료품비 = 일총식료품비 × (365 ÷ 12)

이 있다. 이 중 보건사회부조사 국민영양조사가 식품구성의 기초자료로 가장 적합하나 모든 식품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가을의 특정 계절상품이 조사되므로 국민영양조사, 식품수급표, 영양권장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을 구성한다.

첫째, 식품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식품군별 식품군류의 양을 결정한다. 식품군류별 공급량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2,500Kcal를 공급하기 위한 식품군류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최임심생계비 추정은 2,600Kcal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식품수급표, 국민영양조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둘째, 식품군류별 구성식품의 선택은 1987년, 1988년, 1989년 식품 수급표상의 각 식품의 공급량을 3개년 평균하여 가장 공급이 많은 식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의 구성식품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육류의 경우 3개년 평균으로 볼때 여러가지 육류가 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공급량이 가장 많으므로 3가지를 선택하였다. <표 7>은 식품군별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단백질식품의 경우 한국영양학회 권장량은 고기생선 85g, 알류 55g, 콩류 30g이나, 2,600Kcal를 위 식품은 육류 25g, 어류 60g, 알류 55g, 콩류 30g이다. <표 8>은 각 식품군류별 구성식품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²⁾

셋째, 식품군류별로 선택된 식품의 구성비는 식품수급표의 수급비율, 국민영양조사 결과와 전체식품의 양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각 식품의 양을 결정하는데 -식품가격 산정의 문제로 인하여- 5g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식품구성이 권장식단의 성격이 있으므로 실태식단인 식품수급표와는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육류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비율은 95:276:97이나 닭고기가 권장되는 점

2) 1991년 표준생계비는 1988~1990년 3개년 평균 식품수급표상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식품종류를 선택하였다.

< 표 7 > 식품군별 식품군류 구성비교 (단위 : g)

식품군	한국영양학회		1991년 식료품비 2,600 Kcal	
1. 단백질 식품	고기·생선	85	육류	25
			어패류	60
	알류	55	알류	55
	콩류	30	콩류	30
2. 칼슘식품	우유및 유제품	265	우유및 유제품	265
	뼈째먹는 생선	15	뼈째먹는 생선	15
3. 무기질및 비타민 식품	녹황색채소	100	야채류	300
	담색채소	200		
	과일	200	과일	200
4. 당질식품	곡류	350	곡류	430
	감자류	150	감자류	100
5. 지방식품	유지류	60	유지류, 견과 및 종실류	45

〈표 8〉 다섯가지 기초식품군

군별	식품류	주요영양소	식품명
1. 단백질군	고기, 생선, 알, 및 콩류	단백질, 철분, 비타민B ₁₂ , 아연, 비타민B ₁ , 나이아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생선, 조개, 굴, 두부, 콩, 땅콩, 된장, 달걀, 햄, 베이컨, 소시지, 치즈, 두유, 생선묵
2. 칼슘군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칼슘, 단백질, 비타민B ₂ , 비타민B ₁₂ , 비타민A	멸치, 방어포, 잔새우, 잔생선, 사골,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요쿠르트
3. 무기질 및 비타민군	채소(녹황색채소, 담색채소) 및 과일류	무기질 및 비타민	시금치, 당근, 쑥갓, 상치, 풋고추, 부추, 깻잎, 도마도, 배추, 무우, 양파, 사과, 오이, 양배추, 콩나물, 썩주, 수박, 과일주스, 과일통조림, 미역, 다시마, 파래, 김, 톳
4. 당질군	곡류(잡곡포함), 감자류	당질, 단백질, 아연, 비타민 B ₁	쌀, 보리, 콩, 팥,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토란, 밤, 밀가루, 미숫가루, 국수류, 떡류, 빵류, 과자류, 캔디, 초코렛, 설탕, 꿀
5. 지방군	유지류	지방, 지용성비타민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쇠기름, 돼지기름, 면실유, 들기름, 쇼트닝, 버터, 마아가린, 깨, 실백, 호도

이 고려되어 식품구성비는 95:276:97이다.³⁾

나. 영양가 산정

식품이 구성되면 식품성분표의 영양가에 의거하여 각 영양소별 영양가를 계산하여 모든 영양소가 영양권장량에 충분하게 공급되었는가를 확인한다. 1991년은 기준량이 2,600 Kcal, 실제량이 2,633 Kcal로 나타났다.

다. 식품 총중량 산정

식품구성 각 식품의 양에 식품분석표의 가식부율을 계산하여 실제 필요한 식품의 총중량을 구한다.

라. 식품가격 산정

각 식품의 가격을 1991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조사(경제기획원), 종합물가정보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가격이 무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무게로 환산한다.

3) 각 식품비 구성비의 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수급량이 많은 것은 소비형태와 별무리가 없는 한 동일한 양으로 결정함.
- 식품류의 양의 결정시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참조함.
- 식품수급량은 적더라도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식품류의 양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함.
- 건강의 측면에서 권장되는 식품은 수급량의 비율보다 초과되게 설정함.
- 가공식품의 형태로 많이 공급되는 경우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1인당 소비량을 추정하여 가공식품의 형태로 양을 결정함.

마. 1 일 순식료품비 산정

각 식료품의 가격을 합하면 1일 순식료품비가 계산된다. 1991년 1일 순식료품비는 <표 9>에서 보듯이 2,209원이며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바. 1 일 총식료품비 산정

최임심생계비는 식료품비 계산시 기준열량기준 순식료품비 외에 기호식품 및 외식비를 고려하고 있다.⁴⁾

4)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조사 구성항목 중 음료, 주류, 식료품관련 서비스 및 외식비의 합계이다. 한편 이용된 식품구성만 기준열량 2,600Kcal 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외식비등을 별도로 한다면 영양가의 과다공급이 될 것이며 「마켓·바스켓」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식료품비 계산의 기본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호식품이나 외식비의 순식품과의 관계등 소비 형태에 관한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기호식품이나 외식비의 총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 표 9 > 1991년 식료품비 비교

(단위 : 원)

식 품 군	1991년 (A)	1990년(B)	A ÷ B
단백질식품	432	396	1.09
칼슘식품	369	386	0.96
무기질 및 비타민식품	708	648	1.09
당질식품	561	438	1.28
지방식품	132	113	1.17
총계 (1 일 순식품비)	2,209	1,981	1.12
외식 및 기호식품비	245	220	1.11
1 일 총식품비	2,454	2,201	1.12
월 식료품비	74,643	66,947	1.12

본고는 지난 3년간 식료품비 산정시 사용되어 온 기호식품이나 외식비의 총 식료품비에 대한 비율 10%를 1991년에도 사용하였다.

기호식품 및 외식비를 고려한 1일 총식료품비는 2,454원이다.

사. 월식료품비 산정

1일 총식료품비에 (365 일 ÷ 12 월) 을 곱한 수치가 월식료품비이다. 1991년은 <표 9>에서 보듯이 74,643원이며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3. 4인가구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환산치

비식료품관련 비목별 4인가구 환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자료는 1990년 3월 도시가계조사가 사용된다.⁵⁾

첫째,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 (=A)와 평균가구원수를 구한다.

5) 각 비목별 전표본가구의 평균치산정에 있어서 총소비지출이 전년도 평균치의 3배이상인 가구는 제외시켰다.

둘째, 1991년 3월 도시가계조사 기준 1인만이 취업한 2~6인 근로자가구를 표본으로 비식료품비관련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Y_j = a_j X^2 + b_j X \quad (a_j < 0, b_j > 0) \dots\dots\dots (식 5)$$

여기에서, Y = 비목값
X = 가구원수
j = 해당비목

비목별 (식 5)의 추정결과가 <표 10>에 수록되어 있다.

셋째,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구원수 (=X)가 4인인 경우의 비목값(=Y_a)과 평균 가구원수인 경우의 비목값(=Y_b)을 구하여 B= Y_a÷Y_b를 정의한다. 끝으로 각 비목별로 A(=전표본가구 평균치)에 B(Y_a ÷ Y_b)로 곱한 값이 4인환산치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식료품비 관련 4인환산치가 <표 11>에 수록되어 있다.

4. 가구별 소비지출

가. 식료품비

앞에서 구한 1인가구 식료품비를 토대로 하여 i 인가구 식료품비는

$$1 \text{ 인가구 식료품비} \times \frac{i \text{ 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1 \text{ 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 \dots\dots\dots (식 6)$$

으로 정의된다.

< 표 10 > 4 인환산치위한 회귀방정식 추정계수 (1991. 3)

	a	b	R ²
주 거	-2,008	60,213	0.62
광열·수도	-821	12,776	0.65
가구·집기	-173	9,293	0.16
피복·신발	-1,075	18,078	0.39
보건·의료	-1,677	16,127	0.18
교육·교양	7,726	-4,617	0.39
교통·통신	-1,695	17,594	0.47
기 타	-1,491	37,663	0.57

< 표 11 > 비식료품비관련 비목별 4인환산치

	전체가구 평균치 (A)	Y_a 4인가구추정치 (B)	Y_b 평균가구원수 가구추정치 (C)	4인가구 환산치 (A × B ÷ C)
주 거	195,375	208,727	197,060	206,943
광열·수도	35,592	37,967	36,289	37,237
가구·집기	32,042	34,410	32,332	34,102
피복·신발	51,276	55,120	52,570	53,763
보건·의료	35,380	37,672	36,850	36,169
교육·교양	69,982	105,145	90,736	112,383
교통·통신	40,676	43,264	42,094	41,807
기 타	118,647	126,795	119,973	125,394

<표 12>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가구별 식료품비가 수록되어 있다.

나. 비식료품비

비식료품비관련 i 가구· j 비목의 값은 4인가구 환산치에 i 가구· j 비목 환산승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표 12>에 비식료품비관련 가구·비목별 값이 수록되어 있다.

다. 소비지출

각 가구별로 해당비목의 값을 합계하면 1991년 최빈값 생계비의 소비지출 부문 값이 구해진다.

<표 12>는 1990년 표준생계비의 소비지출총액과 비교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174,214원으로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 표 12 〉 가구별 생계비의 소비지출 (최빈값)

(단위 : 원)

	1990년					1991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167,991	316,671	446,248	556,641	647,592	174,214	328,375	474,391	608,403	730,386
· 식료품	66,947	123,267	168,961	204,295	228,736	74,643	139,666	192,373	235,763	268,836
· 주거비	36,113	68,154	96,301	120,376	140,380	36,886	71,809	104,506	135,134	163,692
· 광열·수도	9,848	17,823	23,961	28,226	30,654	9,235	17,352	24,390	30,274	35,037
· 가구·집기	5,696	10,267	13,784	16,175	17,476	4,126	7,980	11,561	14,800	17,801
· 피복·신발	7,900	15,902	23,954	32,109	40,315	7,688	15,000	21,935	28,548	34,785
· 보건·의료	4,276	8,585	12,861	17,136	21,412	5,988	11,502	16,638	21,376	25,680
· 교육·교양	3,926	13,794	29,710	51,568	79,475	4,159	9,553	28,208	56,192	93,390
· 교통·통신	8,540	14,876	19,046	21,010	20,810	6,731	11,622	14,716	15,970	15,427
· 기타	24,745	44,003	57,670	65,746	68,334	24,828	44,891	60,064	70,346	75,738

Ⅳ.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금액은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1991 생계비 산정시도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하였다. 단 1989년에 방법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타 비소비지출에 오물세만이 포함되었다.

1. 조세

1991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조세는 소득세, 주민세로 구성된다.

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소득세는 1990년과 같이 「간이세액조건표」에 의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는 소비지출총액에서 의료보험 납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10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 1조 1항 규정에 의해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았다.

주민세

소득세와 동일규정에 의해 소득세에 7.5%를 곱한 금액이다.

가구별 조세액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구별 조세액이 <표 13> 에 수록되어 있다.
1인가구는 면세점 이하이므로 조세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보장분담금은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구성된다.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는

$$\text{해당표준보수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text{본임부담비율} \dots\dots\dots (\text{식 7})$$

로 계산된다. 직장피보험자의 부담액은 의료보험법 제 51조에 따라 보험액의 50%를 개인별부담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는 1991년 5월말 현재 전국직장 의료보험조합 평균보험료율 3.19%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 3조 및 동법 4조에 따라 해당보수월액의 1,000분의 15를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국민연금부담액은

$$\text{해당보수월액} \times 15 / 1000 \dots\dots\dots (\text{식 8})$$

〈 표 13 〉 가구별 조세액 (최빈값)

(단위 :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 비 지 출	174,214	328,375	474,391	608,403	730,386
소 득 세	0	270	2,680	4,770	6,350
주 민 세	0	20	200	350	480
조 세 액	0	290	3,880	5,120	7,010

- 주 : 1) 1 인은 독신자로서 부양가족수가 없는 경우의 세액임.
 2) 2 인~5 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의 금액임.
 3) 조세액은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임.

〈 표 14 〉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액(최빈값)

(단위 :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의료보험료산출액	2,710	5,260	7,650	9,530	11,480
국민연금산출액	2,550	4,950	7,200	9,000	10,800
사회보장분담금	5,260	10,210	14,850	18,530	22,280

- 주 : 1)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서 보수월액 등급구분에 따른 표준보수월액 금액이 동일함.
 2) 사회보장분담금은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로 정의된다.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구별 사회보장분담금이 <표 14>에 수록되어 있다.

3. 기타 비소비지출

방법비가 1989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오물세만이 포함되었다. 오물세는 각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나 1990년과 같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산정하였다.

1990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표 15> 에서 보듯이 전용면적과 재산세 납부액이 동시에 고려된다. 주거전용면적은 주택공사의 연구결과에 따라 1988년과 같이 2인가구 27.5m², 3인가구 38m², 4인가구 46.91m², 5인가구 54.94m², 1인가구는 전용면적 27.5m²규모에서 2인이 함께 동거하여 2인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산세 납부기준은 해당 전용면적 중 하한선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구별 오물세액이 <표 16>에 수록되어 있다.

4. 가구별 비소비지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법령상 실제부담액으로 산정된 가구별 비소비지출액이 <표 17>에 수록되어 있다. 1인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총액이 5,260원으로 나타났다.

< 표 15 > 오물 수거료

(단위: 원)

면적	33㎡미만	49.5㎡ 미만	66㎡ 미만
재산세			
5,000원미만	160	880	1,270
5,000원이상	160	950	1,340

< 표 16 > 가구별 오물세 지출액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전용면적 (㎡)	13.75	27.5	38	46.91	54.94
오 물 세 (원)	80	160	880	880	1,270

< 표 17 > 가구별 비소비지출 (최빈값)

(단위 :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 비 지 출	174,214	328,375	474,391	608,403	730,386
비소비지출	5,340	10,660	19,610	24,530	30,560
· 조 세	0	290	2,880	5,120	7,010
- 소득세	0	270	2,680	4,770	6,530
- 주민세	0	20	200	350	480
· 사회보장분담금	5,260	10,210	14,850	18,530	22,280
- 의료보험료	2,710	5,260	7,650	9,530	11,480
- 국민연금	2,550	4,950	7,200	9,000	10,800
· 기타비소비지출	80	160	880	880	1,270
- 오물세	80	160	880	880	1,270

V. 최빈값을 이용한 생계비

<표 12>의 소비지출과 <표 17>의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18>에 수록되어 있다.

1인 생계비는 179,554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2인, 3인, 4인, 5인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2.9%, 5.8%, 8.4%, 11.6% 증가하여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증가률이 높다.

< 표 18 > 가구별 생계비 (최빈값)

(단위: 원)

	1990년					1991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167,991	316,671	446,248	556,641	647,592	174,214	328,375	474,391	608,403	730,386
· 식료품	66,947	123,267	168,961	204,295	228,736	74,643	139,666	192,373	235,763	268,836
· 주거비	36,113	68,154	96,301	120,376	140,380	36,836	71,809	104,506	135,134	163,692
· 광열·수도	9,848	17,823	23,961	28,226	30,654	9,235	17,352	24,390	30,274	35,037
· 가구·집기	5,696	10,267	13,784	16,175	17,476	4,126	7,980	11,561	14,800	17,801
· 피복·신발	7,900	15,902	23,954	32,109	40,315	7,688	15,000	21,935	28,548	34,785
· 보건·의료	4,276	8,585	12,861	17,136	21,412	5,968	11,502	16,638	21,376	25,680
· 교육·교양	3,926	13,794	29,710	51,568	79,475	4,159	9,553	28,208	56,192	93,390
· 교통·통신	8,540	14,876	19,046	21,010	20,810	6,731	11,622	14,716	15,970	15,427
· 기타	24,745	44,003	57,670	65,746	68,334	24,828	44,891	60,064	70,346	75,738
비소비지출계	5,369	12,652	20,660	27,424	34,292	5,340	10,660	19,610	24,530	30,560
· 조세	0	2,850	5,920	8,940	12,700	0	290	2,880	5,120	7,010
· 사회보장분담금	5,304	9,672	14,040	17,784	20,592	5,260	10,210	14,850	18,530	22,280
· 기타비소비지출	65	130	700	700	1,000	80	160	880	880	1,270
생계비	173,360	329,323	466,908	584,065	681,884	179,554	339,035	494,001	632,933	760,946

Ⅵ. 중위값을 이용한 생계비

중위값계층을 표본집단으로 (식 4)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는 경우 각가구·비목별 환산승수의 값이 달라진다.⁶⁾ <표 19>, <표 20>, <표 21>은 각각 중위값을 이용한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가구·비목별 중위값 추정치 및 환산승수를 수록하고 있다.

<표 11>의 4인가구 환산치를 <표 20>의 가구·비목별 환산승수에 곱하면 비식품관련 소비지출 가구·비목별 금액이 구해진다. 단 1인 식료품비는 최빈값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최빈값계층을 이용한 표준생계비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비소비지출액을 구한 후 앞에서 구한 소비지출액과 합산하면 중위값을 이용한 표준생계비가 산정된다.

<표 22>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중위값기준 1991년 가구별 생계비를 비교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202,727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6) 중위값기준 표준생계비는 최빈값기준 표준생계비보다 그 수준이 높다.

< 표 19 > 회귀방정식의 추정계수 (중위값)

	1990년 3월		
	a	b	R ²
식료품	-3,697	59,499	0.87
주거	-12	38,194	0.76
광열·수도	-484	9,959	0.70
가구·집기	-208	6,913	0.21
피복·신발	-255	11,181	0.47
보건·의료	-479	9,426	0.28
교육·교양	6,219	-7,369	0.49
교통·통신	-1,378	13,813	0.54
기타	-3,237	36,091	0.63

< 표 20 > 가구·비목별 중위값추정치

(단위 : 원)

	1990년 3 월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식 료 품	55,802	104,211	145,226	178,849	205,078
주 거	38,182	76,340	114,473	152,582	190,667
광열·수도	9,475	17,981	25,520	32,090	37,693
가구·집기	6,705	12,995	18,869	24,327	29,369
피복·신발	10,926	21,341	31,245	40,639	49,523
보건·의료	8,948	16,938	23,970	30,045	35,163
교육·교양	6,327	10,136	33,860	70,022	118,621
교통·통신	12,435	22,114	29,037	33,203	34,614
기 타	32,855	59,236	79,144	92,579	99,541

< 표 21 > 가구·비목별 환산승수 (중위값)

	1990년 3월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식 료 품	0.289	0.540	0.752	0.926	1.062
주 거	0.202	0.403	0.605	0.806	1.007
광열·수도	0.282	0.535	0.759	0.955	1.121
가구·집기	0.151	0.293	0.426	0.549	0.663
피복·신발	0.182	0.356	0.521	0.678	0.826
보건·의료	0.225	0.426	0.603	0.756	0.885
교육·교양	0.061	0.097	0.325	0.672	1.138
교통·통신	0.182	0.323	0.425	0.486	0.506
기 타	0.255	0.460	0.615	0.720	0.774

< 표 22 > 가구별 생계비 (중위값)

(단위: 원)

	1990년					1991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계	194,309	366,784	517,743	646,695	754,273	196,457	369,417	543,448	710,165	869,558
· 식료품	66,947	123,278	168,776	203,658	227,923	74,643	139,471	194,227	239,168	274,294
· 주거비	44,079	83,732	119,137	150,116	176,847	41,802	83,398	125,201	166,796	208,392
· 광열·수도	12,622	22,435	29,440	33,601	34,953	10,501	19,922	28,263	35,561	41,743
· 가구·집기	6,259	11,850	16,807	21,132	24,789	5,149	9,992	14,527	18,722	22,610
· 피복·신발	10,295	20,489	30,580	40,468	50,253	9,785	19,140	28,011	36,451	44,408
· 보건·의료	5,429	10,926	16,525	22,226	28,029	8,138	15,408	21,810	27,344	32,010
· 교육·교양	6,791	20,267	40,639	67,591	101,439	6,855	10,901	36,524	75,521	127,892
· 교통·통신	10,826	18,725	23,777	25,902	25,140	7,609	13,504	17,768	20,318	21,154
· 기타	31,061	55,082	72,062	82,001	84,900	31,975	57,681	77,117	90,284	97,055
비소비지출계	6,723	16,374	25,632	37,752	47,594	6,270	13,100	22,510	31,290	39,330
· 조세	730	4,700	9,020	16,460	22,570	0	1,490	4,920	8,130	11,140
· 사회보장부담금	5,928	11,544	15,912	20,592	24,024	6,190	11,450	16,710	22,280	26,920
· 기타비소비지출	65	130	700	700	1,000	80	160	880	880	1,270
생계비	201,032	383,158	543,375	684,447	801,867	202,727	382,517	565,958	741,455	908,888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소비자물가조사」, 199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7.

물가협회, 「종합물가정보」, 1991. 4.

박영범, 조우현, 「표준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보건사회부, 「국민영양조사 보고서」, 1987, 1988, 1989.

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개발연구원, 1987.

조우현,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가지 문제점」, 1988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1989.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보고서」, 1990.

———, 「1990년도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19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87, 1988, 1989.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 1986.

한국식품연구소, 「식품 및 음식의 눈대중량」, 198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 영양권장량」, 1989.

KLI- II -9115

1991년 標準生計費算定에 관한 研究

1991년 11월 22일 인쇄
1991년 11월 27일 발행

발행인 孫 昌 熹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한국노동연구원
전 화 (代) (02) 782-0141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1991

정가 3,000원